

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시행계획(3차) 공고

2024년도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일
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1 사업 개요

☐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
- 민간 기술거래기관*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

* (정의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기술이전법'이라 한다) 제 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,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**민간기관**

☐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

-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(예정포함)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공고 구분	접수기간	선정 및 통보(예정)
1차	3~5월	6월
2차	6~7월	8월
3차	9~11월	11월

□ 지원규모 및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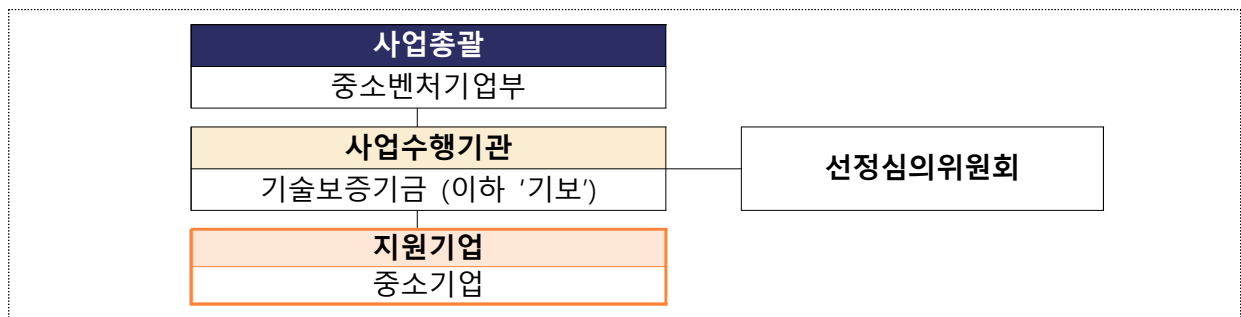
- (지원규모) 연간 20건 내외
- (지원예산) 50백만원 내외

*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(법(법령))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(요령(고시))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
- (관리지침)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□ 추진체계



- (사업총괄)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
- (사업수행기관) 사업 운영, 지원기업 선정·평가*,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

* (선정심의위원회)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
□ 지원방식 및 한도

- (지원방식) 기술 유형에 따라 **신탁기술***과 **일반기술****로 구분하고, 일반기술은 **중개방식(단독/공동***)**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*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'기술신탁관리기관'에 위탁된 기술

** (일반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2조제5호의 '공공기술'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

*** (공동중개)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

- (지원한도)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*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(부가세 등)은 지원기업이 부담

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□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

- (지원대상)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(아래 기간 내,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)

- (계약 체결일) 2023. 12. 1. ~ 2024. 11. 15.

-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(위탁자)*

*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

- (일반기술) 민간 기술거래기관*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**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,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하기로 약정한 기업

* 「기술이전법」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
** 「기술이전법」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

- (지원방법)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(혹은 전부)를 중소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

구분	신탁기술 중개수수료	일반기술 중개수수료
납부 기관	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 (기술보증기금)	「기술이전법」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(기술보증기금, 공공기관 등 제외)
지원 대상	위탁자(양도인)인 중소기업	①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또는 ②중개수수료 수취예정인 민간기관**
지원 범위	중소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*	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*

* (지원한도)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

**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하여 중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

□ 신청 자격

- 사업기간 내('23. 12. 1. ~ '24. 11. 15.)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**중소기업** 또는 정산 예정인 **민간 기술거래기관**

- (**중소기업**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중소기업**

- (**민간 기술거래기관**)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,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**민간 기술거래기관***

* (유의사항)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

□ 제외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- 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②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'참여제한' 중인 경우

구분	확인방법
참여 제한	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 ○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안내 → STEP1/사전준비사항 → 참여제한 확인

- ④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평가대상 기술 제외 대상
-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 (단,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 가능) - 질권,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- 고소고발, 소송, 무효심판 취소신청, 강제집행, 조정,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-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(단,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)

- ⑤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
- 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- 평가대상 기술 또는 일반기술 매수자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(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)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
-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

1. 일반유흥주점업, 2. 무도유흥주점업,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

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- 매수희망자가 사업화 주체(기업)가 아닌 일반 개인(자연인)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*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*** 관계기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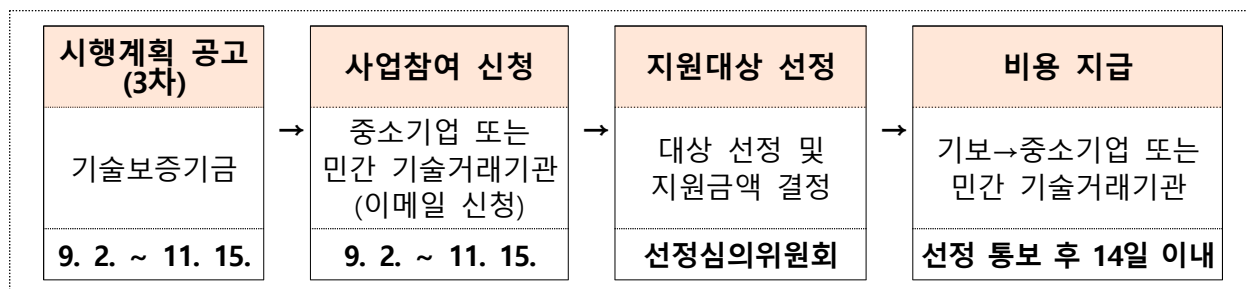
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

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관계기업

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
3 지원절차 및 내용

□ 지원절차



*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

- (지원범위) 본 사업기간*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, 실집행된 기술료**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

* (사업기간) '23.12.1.~'24.11.15.

** (기술료)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/선급기술료에 한하며,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제외

가 신탁기술

- 양도인(위탁자)이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

나 일반기술

- 일반기술의 기술공급자(양도인)가 중개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대비 사업 공고시 명시한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*를 적용

* '24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 : 7.4%

- 매수자(중소기업)가 정산/납부한(예정포함) 중개수수료(부가가치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 - (단독중개)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단독중개한 경우로 중소기업이 민간 기관에 납부완료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(페이백) 형식 지원
 - (공동중개)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을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원(단, 중소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, 부가가치세는 직접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해야 함)

- (지원한도)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

*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최고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

**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(페이백) (다만, 일반기술 공동중개건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(부가세제외)를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)

- 해당 회차의 지원대상 금액 합계가 당해연도 예산 한도(50백만원)을 초과할 경우,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지급 예정(천원미만 절사)

※ 지원금액 안분지급 산식

- (예시) 1·2회차 30백만원 지원 이후, 3회차 지원예정금액 총액이 40백만원인 경우

20백만원 (당회차 잔여예산)	X	$\frac{1\text{백만원}(A\text{기업의 } 3\text{회차 지원예정금액 총액})}{40\text{백만원}(3\text{회차 지원예정금액 총액})}$	=	50만원 (A기업의 3회차 최종 지원금액)
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당회차 잔여예산 = 당해연도 지원예산(50백만원) - 기 지원금액(30백만원)

4

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 기간

- (공고기간) '24. 9. 2. (월) ~ '24. 11. 15. (금) (75일간)
- (접수기간) '24. 9. 2. (월) ~ '24. 11. 15. (금) (75일간)

□ 신청 및 접수 방법

※ 이메일 신청 후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

- (이메일 신청)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
 - 제출서류 연번 별로, 스캔 파일(PDF) 각각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
 - *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,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,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
 - ** (유의사항) 신청서 제출일자과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,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(도착일 기준)된 날을 신청일로 봄
- (등기우편 제출) 제출서류 중 “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<별첨1-1>” 및 “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”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(신탁/일반기술 공통)
 - 위 <별첨1-1, 별첨1-2> 서류에 한하여,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(영업일 기준, 금번 회차는 '24. 11. 22.(금))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
- 이메일/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 대상 기업'으로 인정하며,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

구 분	주 소
이메일	transfer@kibo.or.kr [메일제목]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
등기우편	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

□ 제출서류

가 신탁기술

연번	서식명	
1	▶ 신청 기본서류 (신청기업은 기술신탁관리기관,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)	
	신청 기업	(1)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」 참여 신청서(붙임1) -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(법인/개인) 인감도장 날인
		②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<별첨1-2> - 동의서는 이메일 및 등기우편(원본) 제출
		(3) 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 -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확약서 필수 제출
	공동 권리자 (해당시)	(4)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동의서<별첨1-1, 별첨1-2> -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
		(5)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<별첨4> - 본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서(해당기관이 직접 작성)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	기술신탁 관리기관	(6)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 -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	▶ 신청자격 증빙서류	
	(1)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	
2	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www.smes.go.kr) - 공고일(24. 9. 2.) 이후 발급분	
	(2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
	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-정부24 (www.gov.kr) 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-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	
	(3)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	
3	▶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	
	- “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(10p)”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, 제출	

나

일반기술

연번	서식명
1	▶ 신청 기본서류 (신청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,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)
	신청 기업
	(1)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」 참여 신청서(붙임1 또는 2) -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(법인/개인)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-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사업 신청시 <붙임2>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
	②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<별첨1-2> - 동의서는 이메일 및 등기우편(원본) 제출
	(3) 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 -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확약서 필수 제출
	공동 권리자 (해당시)
	(4)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동의서<별첨1-1, 별첨1-2> -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
	민간기술 거래기관
	(5) 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<별첨5> -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	(6)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	⑦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<별첨1-2>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
2	▶ 신청자격 증빙서류
	(1)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www.smes.go.kr) - 공고일(24. 9. 2.) 이후 발급분
	(2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- 발급처 : 국세-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-정부24 (www.gov.kr) 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-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	(3)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- 발급처 : 특허로 (www.patent.go.kr) 외 - 공고일(24. 9. 2.) 이후 발급분 (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) -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
3	▶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- “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(10p)”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, 제출

*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신청 시, **중개수수료를 납부 또는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**을 기준으로 동의서 및 증빙서류 준비

「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」 제출시 유의사항

□ “기술신탁관리기관” 또는 “민간 기술거래기관”과 협의하여 아래 서류 필수 제출

① 기술이전계약서 사본

- 양도인(기술공급자), 매수인(중소기업 등), 중개기관(기술거래기관)*의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(원본대조필 날인)

* 중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'기술이전계약서'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,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중개기관의 기술중개 사실이 확인되는 '특허양도증', '통상실시권 허락서', '전용실시권 허락서' 등 보완제출 가능

②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

신탁기술	양도인(위탁자)이 지급한 아래의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- 정산내역서, 이체확인증, 영수증, 기술신탁 최종계산 승인서 등 정산/납부 내역
일반기술	양도인(기술공급자)과 매수인(중소기업 등)이 중개기관(민간 기술거래기관)에 지급한 아래의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- 협약서, 중개수수료 산정서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 등 < 기술이전계약서에 중개수수료율 및 금액이 기재된 경우 아래 ①, ② 제출 생략 > ① 협약서: 양도인 또는 매수인이 중개기관과의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제출 ② 중개수수료 산정서: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제출 ③ 세금계산서: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, 비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의 직인 날인 필수 ④ 이체확인증: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-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, 제출일 기준 인터넷 이체내역 출력분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(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) ⑤ 기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 - 공동중개에 한하여, 매수인(중소기업 등)이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,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납부한 증빙서류는 선정 시, 사업수행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가 제출

③ 기술료 증빙서류

-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/납부 관련 증빙서류
- * 정산내역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

☞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, **사업수행기관(기보)에 직접 제출* 가능** (단,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미비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)

5

선정 및 통보

□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

- (요건검토)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 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,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

※ 유의사항

- ① 제출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위원회' 대상으로 추천
- ②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며, 제출서류 중 **"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", "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(원본)"**는 반드시 기보로 **우편제출**해야 함
- ③ 신청기업이 미비된 서류(**②번 서류에 한함**)를 보완제출하였더라도 신청 마감일 경과후 5일(영업일 기준) 이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

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- (평가방법) 기보 내·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
 -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적정성* 등 검토 및 중개수수료 지원 효율 결정
- *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
- (선정통보) 선정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

6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
- 사업수행기관은 신청기술 유형별(신탁, 일반) 선정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연간 지원한도 등에 따라 유효한 접수 건의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수 있음
- 신청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지원 한도는 동일기술 당 최대 1천만원이며 '22~'23년도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함
- 동일 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본 사업기간('23.12.1.~'24.11.15.) 내 1회에 한함(사업기간 내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기 지원된 경우 추가지원은 불가)
-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중복 지원* 가능
 - * 본 사업기간 내에 기술이전계약과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, 중개수수료의 총 합계는 지원한도(1천만원)를 초과할 수 없음
- 통상실시권은 본 사업기간 내에 권리자(기술보유자)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*
 - * 다만,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- 복수의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, 중개수수료 지원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, 동일기술에 대한 공동중개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도는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
-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,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, 비용지급 시 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*를 유지해야 함
- * 이전대상 기술의 등록원부 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등 필요시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(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)
-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) 필히 기재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,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, 제재,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통보 후 기보의 추가요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 등)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신청기업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붙임3)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

제출서류(첨부서식)		
붙임1, 2	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참여 신청서	공통제출
별첨1-1	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별첨1-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별첨2	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	
별첨3	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참여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	
별첨4	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(기술신탁관리기관용)	신탁기술
별첨5	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	일반기술
별첨6	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	공통제출
붙임3	이의신청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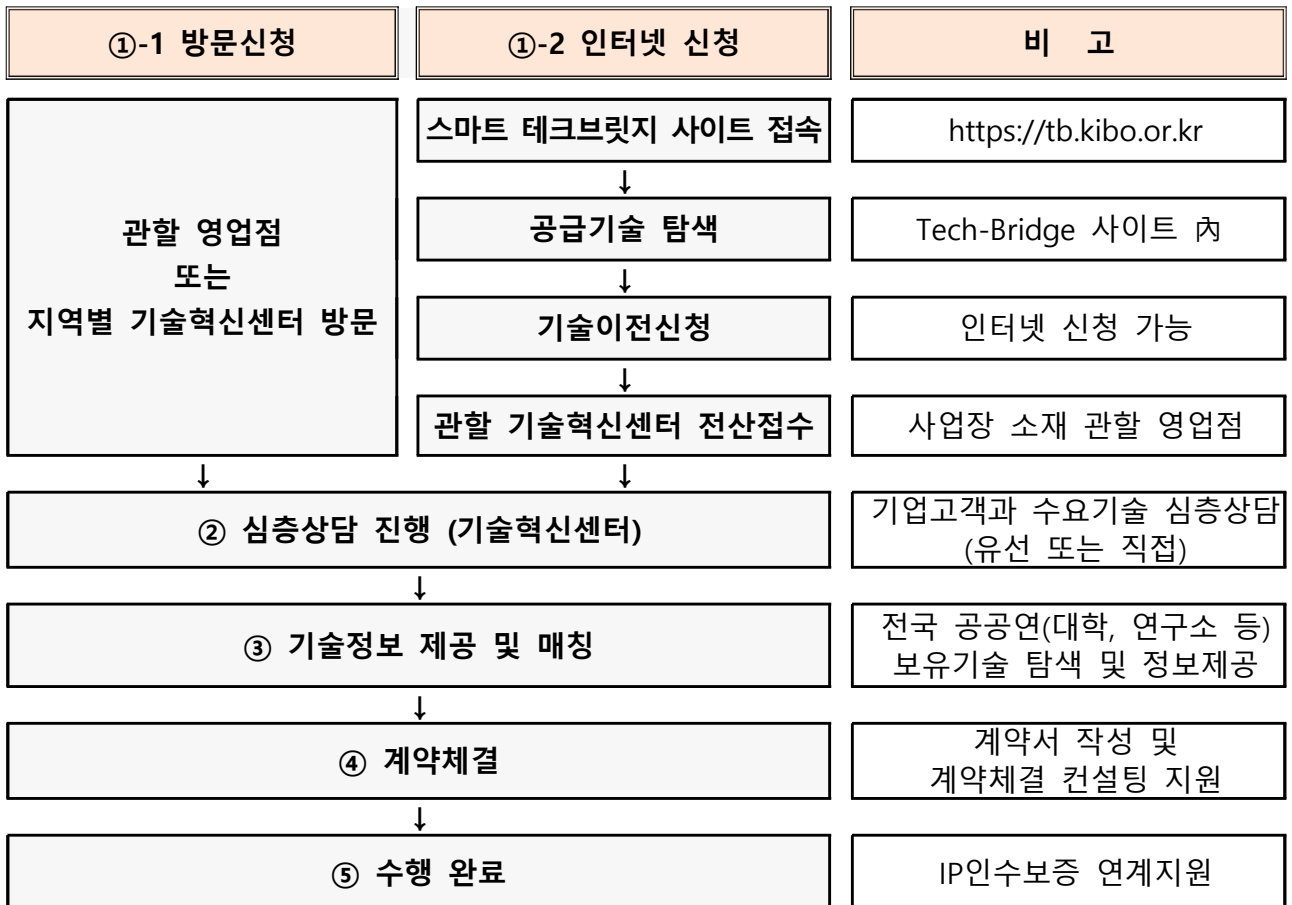
7 문의처

- ☐ **(사업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
☎ 051-606-7419, 7396, 7489 ✉ transfer@kibo.or.kr
- ☐ **(우편 제출처)**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,
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

참고

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

□ 기술이전 절차



□ 지역별 기술혁신센터

구 분	전 화	주 소
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	02-2155-3662	서울 서초구 매현로 16,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
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	02-6124-6930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 JNK디지털타워 1807호
인천기술혁신센터	032-420-3580	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, 4층
경기기술혁신센터	031-8006-157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, 세영빌딩 8층
대전기술혁신센터	042-610-2279	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3층
부산기술혁신센터	051-606-6561	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,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
광주기술혁신센터	062-570-7350	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-22, B동 801호
대구기술혁신센터	053-550-1450	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, 그랜드M타워 12층